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9	3	1993. 1. 26	총 재 조 순

의안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의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, 제65조

제의취지 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및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전반적 금리수준의 하향 안정화를 위하여 금융기관 여신금리의 인하 여력을 확충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.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췌

한국은행법 제7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 ~ ⑥ (생 략)

한국은행법 제65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예금에 대한 이자, 기타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"금융기관 인수인계 등에 관한 규정" 개정(안)

구분	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1 ~ 제51	(생 랐)	제11 ~ 제51 (생 랐)	
	(생 랐)		
별 조	제102조 (금융기관 인수인계 수수료율)	제102조 (금융기관 인수인계 수수료율)	신규
1. 차 례금	연 10.0% (지방은행은 연 10.5%) 2년 이상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	1. 차 례금 연 9.0% (지방은행은 연 9.5%) 2년 이상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	1.0%p 인하
2. 차 례금	연 5.0% (지방은행은 연 5.5%)	2. 차 례금 연 3.0% (지방은행은 연 3.5%)	2.0%p 인하
3. 차 례금	연 11.0% (지방은행은 연 11.5%) 5,000만원 이상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 연한 초과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	3. 차 례금 연 10.0% (지방은행은 연 10.5%) 5,000만원 이상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 연한 초과 차 례금에 대한 차 례금	1.0%p 인하
4. 차 례금	연 4.0% (지방은행은 연 4.5%)	4. 차 례금 연 1.0% (지방은행은 연 1.5%)	3.0%p 인하
5. 차 례금	연 5.0% (법인과 개인 기업에 한함)	5. 차 례금 연 4.0% (법인과 개인 기업에 한함)	1.0%p 인하
6. ~ 8.	(생 랐)	6. ~ 8. (생 랐)	
9. 정기 적금	연 10.0% (지방은행은 연 10.5%)	9. 정기 적금 연 9.0% (지방은행은 연 9.5%)	1.0%p 인하

10. 가계유보정기
적금 연 13.0% (금리인상 시 1.0%포인트
가산) 3년, 계약금 1,000
만원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1. 근로자퇴직저축 연 13.0%

12. 근로자주거저축 정기적금 1.0%포인트 (계)
저축금 1.0%포인트, 만기 시 3,00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3. 근로유보금 연 11.0%

14. 근로유보금 정기적금 1.0%포인트

15. 근로유보금 일반 연 8.5% (계) 6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6. 근로유보금 일반 연 8.5% (계) 6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0. 가계유보정기
적금 연 12.0% (계) 1.0%포인트
가산) 3년, 계약금 1,000
만원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1. 근로자퇴직저축 연 12.0%

12. 근로자주거저축 정기적금 1.0%포인트 (계)
저축금 1.0%포인트, 만기 시 3,00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3. 근로유보금 연 10.0%

14. 근로유보금 정기적금 1.0%포인트

15. 근로유보금 일반 연 7.5% (계) 6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

16. 근로유보금 일반 연 7.5% (계) 60만원
지급 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
단, 만기 시 3,000만원 지급 시
연 1.0%포인트 가산) (계)